

# 법원도서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1. 의결주문

법원도서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- 법원도서관의 역할 변화(대국민서비스 강화)와 IT환경 및 자료 환경의 변화(전자파일 형태로 공유, 영상 등 비도서 자료 증가)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「법원조직법」 제22조의 규정과 법원도서관의 역할 변화를 고려하여 ‘법률문화 창달’을 관장사무에 명기(안 제2조제1항)
- 수집 대상을 ‘출판물의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’에서 ‘해당 자료의 전자파일’로 수정(안 제14조제1항, 제2항)
- 수집 대상의 범위를 ‘발간된 출판물’에서 ‘영상콘텐츠 등 비도서 자료’까지 확대하는 근거 마련(안 제14조의2 신설)

#### 4. 법원도서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#### 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법원도서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법원도서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재판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”를 “재판사무를 지원하고 법률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출판물의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1부를”을 “해당 자료의 전자파일을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초록을 제1항의 디스켓 또는 디스켓에 수록하여”를 “초록의 전자파일을”로 한다.

제14조의 2를 신설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관장사무)</p> <p>① 도서관은 <u>재판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</u> 도서 기타 도서관 자료 및 사법자료를 수집·정리·보존·편찬·발간하며,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에 관한 정보제공과 도서관 봉사를 행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2조(관장사무)</p> <p>① ---- <u>재판사무를 지원하고 법률 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(자료의 납본)</p> <p>① 각급법원 등이 출판물을 발간할 때에는 도서관 소장용과 국내외 각 기관과의 자료교환용으로 필요한 부수 및 <u>출판물의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1부를</u>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각급법원 등은 제1항의 출판물에 10면 이상의 법률논문(판례평석 포함)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지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된 해당 법률논문(판례평석 포함)의 <u>초록을 제1항의 디스켓 또는 디스켓에 수록하여</u>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.</p>	<p>제14조(자료의 납본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<u>해당 자료의 전자파일을</u>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초록의 전자파일을</u> -----.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4조의 2(영상자료 등의 수집)</p> <p>① <u>각급 법원 등이 재판 및 소송절차에 관한 영상자료(이하 ‘재판</u></p>

	<p><u>관련 영상자료 등' 이라 한다.)를 사법부전산망 등을 통하여 게시한 때에는 도서관은 그 전자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도서관은 전항에 의하여 제공받은 재판 관련 영상자료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하는 경우 영상자료 등을 제공한 각급 법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도서관은 제1항의 재판 관련 영상자료 등을 제공한 각급 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한다.</u></p>
--	---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도서관행정처 기획담당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216